



무허가 부화장 고발센타 설치운영키로

1. 본회는 초생추의 유통질서 확립과 우량 초생추를 보급함으로서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13조에 종계업은 등록, 부화업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2.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종계업 또는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어 생산 및 수급조절에 불균형을 가져와 가격이 항상 불안정할뿐 아니라 불량초생추의 생산공급등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3. 축산법에 의거 등록허가된 종계부화장을 보호 육성함은 물론 실용계 사육농가의 피해를 사전방지하여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무허가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을 색출하여 당국에 고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4. 별첨과 같이 무허가 부화장등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코자하니,
5. 본건 시행의 취지를 전회원에게 주지시켜 자기가 알고 있는 무허가 부화장 또는 미등록 종계장을 빠짐없이 고발(신고)토록 하여 이번 기회에 무허가

부화장 또는 미등록종계장이 일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부화장 등 고발(신고)센타 설치운영 요령

1. 명 칭 : 무허가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 고발(신고)센타

2.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전화 : 588-7651) (팩스 : 588-7655)

3. 설치기간 : 1989.4.15-1989.12.31

4. 고발접수대상

○무허가로 부화장을 경영하는자

○미등록으로 종계장을 경영하는자

○미검정종계 유효기간이 초과된 종계를 보유하고 있는자

○불량종란(축산법에 의한 검정을 받지않은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 또는 불량초생추(축산법에 의한 계통보증서가 없는 병아리)를 생산 또는 유통하는자

5. 고발방법

○전기 제4항의 고발접수 대상을 알고 있는자 또는 단체에서는 위법 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집약하여(예 : 대상자·장소·위법내용·위법기간·…사업규모등) 서면 또는 전화로 고발한다.

○고발자의 신분은 밝힐 필요는 없으나 고발내용의 신빙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신분을 밝혀주기 바라며 고발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로 할 것임

6. 조치

○고발이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실 확인을 한후(청문 또는 현지조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당국에 고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조치결과는 월간양계지를 비롯한 양계관련 신문 잡지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기명으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는 고발자에게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회 지도조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채란양계 소득표준율 인하

-10% 낮아져-

본회가 금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생산과잉 및 유통의 불합리로 계란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 이하로 수취하여 적자운영, △미국의 혹심한 가뭄으로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대두의 국제가격 폭등으로 국내 사료가격 인상, △질병으로 폐사 피해 및 생산비 저하로 피해가 막심, △양계농가는 영세하고 기장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현행 유통구조가 기장하기에 어려운 형편으로 대부분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 이미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는 채란양계 소득표준율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행 7.2%에서 10% 가 인하되어 6.48%로 조정되었다.

이로인해 채란계 32,000수를 사육하는 농장은 현행 9.9%에서 9% 만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1,945,000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닭 살처분 보상금지급 건의 및 회신

닭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양계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11일 본회가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닭의 살처분시 보상금 지급 건의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었다.

본회 건의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제1항 및 동시행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가축에 대하여 국가는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 닭의 경우는 전기 2~3호의 사항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양계업자는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닭이 제1종 또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이환되었거나 이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신고를 할시 당국의 보상대책 없는 각종 제재조치를 두려워하여 전염병 발생사항을 은폐하고 전염병에 이환된 닭(이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닭포함)을 방배하므로 닭의 전염병의 전파를 촉진시키고 전염병발생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발생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어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등 닭의 전염성 질병예방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바

○ 닭의 제1종 또는 제2종 전염병에 이환된 양성닭을 조기색출하여 살처분 함으로써 전염병의 만연을 사전 방지하고 전염병 발생시 초기 신고를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며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으로 양계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 89년도부터라도 전염병(제1종 및 제2종)에 이환된 닭의 살처분명령의 강력한 이행과 이에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 농림수산부 회신

1. 양계협 제48호('89.3.1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귀협회에 우선 감사드리오며, 닭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귀 협회의 건의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
3.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41종중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 전염병은 동법 제9조에 의한 살처분 의무대상 전염병과 우결핵, 부루세라, 꽈지콜레라 및 오제스키병으로 한정하여 살처분 명령된 가축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는 발생시 초기신고, 가축이동 제한 및 이환축 살처분후

매몰 조치가 최선의 방역 대책으로서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절감하고 있지만, 현 예산 여건 등으로 지급대상 전염병을 확대하기가 지난하고,

5. 닭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백신은 방어효과가 우수하므로 적기에 예방 접종할 경우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축주가 농장의 방역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방역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며, 오히려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축주의 방역관리 소홀을 초래하여 예방접종의 태만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6. 닭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양계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귀 협회의 건의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방역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란과 난황의 수입추천 요령공고

상공부는 지난 3월13일자로 조란 및 난황에 대한 수입추천 요령을 본회로 통보하였다.

수출입 공고 제6조 수입제한 승인품목 중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수입추천을 요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요령을 수출입공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기준

| H·S | 품목명 | 추천대상 품 목 | 추천기준 |
|-------------|-----------------------------|-------------|---------------------------------------|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 과 난황 | 좌동 | 가. 국내수급조절상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에 한함 |
| 0408 190000 | 기타(닭의 것) | | |
| 0408 990000 | 기타(닭의 것) | | |

○추천대상자

가. 계란가공업체

나.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다. 전 “가”, “나”항의 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한 수출입업자.

3. 처리기간 : 10일

4. 구비서류

가. 수입(승인)신청서 2부

나. 물품매도 확약서 1부

다. 수입대행 계약서(수입대행시) 1부

○부칙

이 요령은 8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VIV전시회 참관 및 육계 계열화 산업 시찰단 출국 —4월10일~16까지—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일본 VIV – ASIA 제2회 축산전시회 참관 및 육계계열화산업 시찰을 위해 20명이 4월10일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현황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보다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하였으며, 동경, 시코꾸, 후쿠오카 지방을 들리보게 되는데 특히 동경 하루미에서 개최되는 VIV – ASIA 제2회 축산전시회를 관람하여 국제 축산기술의 수준을 배우게 할 예정이며, 시코쿠 에히메 지방에 있는 도계장·브로일러 가공공장을 방문하게 된다.

시찰단은 단장에 임덕성 국장(양계협회)은 비롯 김용화 대리(양계협회), 김남기 전무(고창기계), 박현근 과장(고창기계), 이영춘 주임(고창기계), 최병용 주임(고창기계), 김이현 부사장(고창양계), 윤재섭(고창양계), 이하창 부장(선진사료), 이상용 대리(선진사료), 이한주 주무(선진사료), 민동기(선진사료), 최호연 실장(한풍산업), 한영철(양계농장), 손세창 과장(하림식품), 김남균 대리(하림식품), 윤재현 기자(축산신보), 김성수 사장(영성농장), 최상윤 부장(대한제당), 최석호 과장(대한제당) 등이다.

경기육계연합회 결성 —본회 용인분회 등 4개 지역—



본회 용인육계분회 회원들을 비롯한 신갈, 성남, 양지 지역 등의 4개 지역의 계우회를 통합, 육계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30일 신갈 행복예식장에서 경기육계연합회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결성식에는 이인형 중소기축과장, 본회 황인옥 전무, 강희구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이 참석했는데 신갈 계우회 신동욱씨는 경과보고를 통해 “육계인들은 농촌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유통구조의 불합리와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개 지역의 육계인들은 하나의 조직체로 발전시켜 생산비 절감을 꾀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기육계연합회의 임원진은 회장 최종필, 부회장 정연택, 감사 김연주, 이병도, 총무 최진호씨가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경기육계연합회는 △육계업은 부업이 아닌 천직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육계 유통구조 개선과 육계협동조합 구성 촉구 △안정적으로 육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간이계사의 양성과 △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때까지 육계 수입 절대 반대 등의 결의문 채택도 있었다.

김포계우회 본회에 가입키로 결정

김포지역 채란계 사업자 모임인 김포계우회가 지난 4월3일 총회를 가지고 본회 분회로 가입키로 만장 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양계업계는 구심체가 미약하여 양계업 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계업자의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체 형성을 위해 본회에 가입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활동했던 전국계우회연합회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결속력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산란계 방역위생에 관한 세미나 개최

제일화학이 주최하고 본회와 한성협동회 후원으로 지난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부산 온천예식장과 대구 시민회관에서 천호그룹 오경록 박사를 연사로 초청해 산란계 방역위생관리와 효과적인 파리구제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위생관리를 위해서 급이, 급수, 환기, 온도, 습도 등 사양관리 측면에서 환경요소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 주고 백신접종으로 전염성 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라바덱스 사료첨가제를 산란계 사료에 첨가하여 파리가 문제되는 여름철에 계속 급여만 하면 라바덱스는 닭의 소화관을 그대로 통과하여 분변속으로 나와 계분속의 구더기 성장을 억제, 번데기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파리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수원분회 사무실 이전

본회 수원분회는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된 사무실은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수원사업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 주소 :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9번지 9층
- 전화 : (031)32-5467